



영국 Master Trust 제도에서 퇴직연금사업자의 퇴출과 합의

강성호 연구위원, 김혜란 연구원

영국은 올해 10월부터 새로운 퇴직연금 규제의 도입으로 'Master Trust 퇴직연금사업자'의 약 25%가 퇴출될 것으로 예상함. 이러한 이유에는 2012년 퇴직연금 자동가입이 의무화된 이후 관련 사업체를 중심으로 자산 및 가입자 규모가 급증하였으나, 적합성 및 자본충분성 등 구체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수탁자 책임과 수급권 보호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임. 이에 Master Trust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적격성 검사 등으로 퇴출이 우려되고 연쇄적으로 가입자 보호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. 이를 통해 볼 때 우리나라도 제도 변경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문제 등과 같은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요구됨

■ 영국은 올해 10월부터 새로운 퇴직연금 규제의 도입으로 'Master Trust 제도를 운영하는 퇴직연금사업자'(이하 'Master Trust 퇴직연금사업자')의 약 25%가 퇴출될 것으로 예상됨¹⁾

- Master Trust 퇴직연금사업자의 허가 및 규제에 관한 내용(code of practice)이 포함된 The Pension Schemes Act 2017(이하 'PSA 2017')이 발효될 예정이기 때문임
- Master Trust 제도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하나의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여²⁾ 신탁형(Trust-based)으로 운영되는 퇴직연금제도임³⁾
 - 신탁형(Trust-based)이란 수탁자가 기금의 관리·행정·투자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고, 퇴직연금 가입자를 위하여 행동해야 하는 신탁의무를 짐⁴⁾

■ 2012년 퇴직연금 자동가입이 의무화된 이후 Master Trust 퇴직연금사업자가 관리하는 자산 및 가입자 규모가 급증함

- 자동가입제도 이후 퇴직연금 유형별 가입자 규모를 보면 DB형과 혼합형은 큰 변화가 없었으며, DC형은

1) FT(2018. 8. 7), "Popular workplace pension schemes to quit UK market"

2) 이러한 방식은 연합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, 우리나라의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하는 퇴직연금운영 방식으로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함(<http://pension.kcomwel.or.kr/websquare/?w2xPath=/pages/abo/HP01020100.xml>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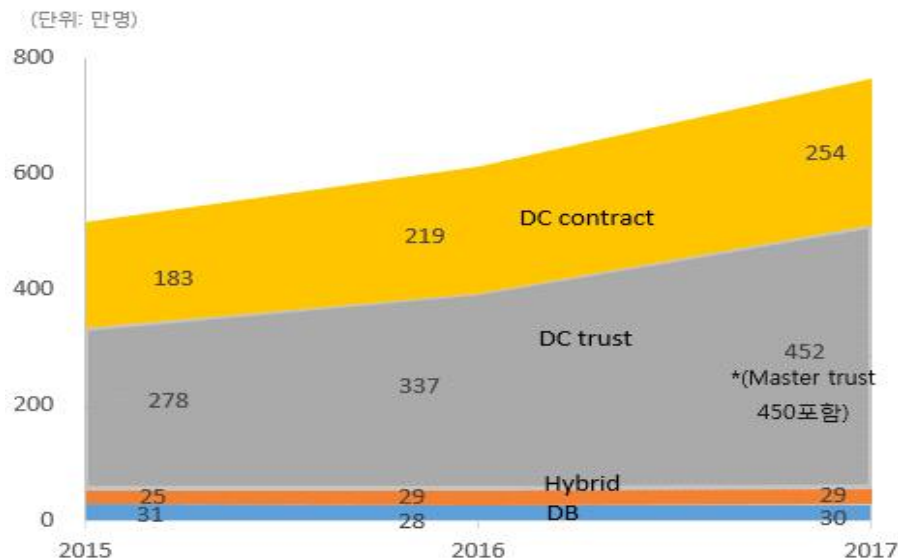
3) <http://www.legislation.gov.uk/ukpga/2017/17/section/1>

4) House of Commons Library(2018. 3), *Master Trust regulation*

신탁형과 계약형이 존재하는데⁵⁾ 이중 신탁형이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(〈그림 1〉 참조)

- Master Trust 제도의 가입자는 2010년 약 20만 명 정도였으나 2017년 3월까지 퇴직연금에 자동가입한 개인 중 절반 이상(59%)인 약 450만 명이 동 제도에 가입하였으며, 2030년까지 가입자가 약 7백 8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됨⁶⁾
 - Master Trust 제도는 복수계약(폴링) 형태로 운영되므로⁷⁾ 설립 및 운영경비 면에서 규모의 경제효과가 나타나 가입자 수가 급속히 증가한 것으로 평가됨
- 연금감독청(The Pension Regulator 이하 'TPR')에 의하면 2016년에 76억 파운드의 자산이, 최근에는 약 81억 파운드 자산이 84개의 Master Trust 퇴직연금사업자에 의해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⁸⁾

〈그림 1〉 자동가입제도 이후 퇴직연금 누적 가입자 수(2015~2017년)



주: 1) 각 연도별 3월 시점의 값임

2) 2017년 DC Trust 4,521천 명은 Master Trust 4,499천 명과 기타 DC Trust 23천 명임

자료: Pension Policy Institute(2016, 2017), *The Future Book*

■ Master Trust 제도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적합성 및 재무건전성 등 구체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수탁자 책임과 수급권 보호 문제가 제기되었음

- PSA 2017 도입 전에도 TPR이 Master Trust 제도를 개발하여 자체적으로 운영한 바 있으나 수탁자 적합성 및 재무건전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존재하지는 않았음

5) DWP(2014), "Minimum Governance Standards for DC trust-based schemes"

6) Pensions Policy Institute(2016), *The Future Book*

7) Master Trust 제도도 처음에는 단일 고용주를 위해 개발되었으나 복수의 고용주를 위한 제도로 변함

8) Pensions Policy Institute(2016), *The Future Book*

- Master Trust 제도는 신탁형으로 운영되므로 특성상 수탁자 규제를 통해 간접적으로 가입자를 보호하기는 하나, 상대적으로 가입자 보호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이 제기되었음
 - 신탁형은 TPR의 규제를 받고 계약형은 금융행위감독청(Financial Conduct Authority, 이하 'FCA')의 규제를 받고 있어 규제 및 관리감독이 분리되어 있음
 - 즉, 신탁형은 수탁자가 가입자의 이익을 위해 권한을 행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의무를 지므로 신탁형을 관리하는 TPR이 수탁자(금융기관)의 업무를 규제하는 반면, 계약형은 가입자와 퇴직연금 제공자 간(금융기관)의 계약관계를 규제하므로 FCA에서 수급권 보호 등 계약자 관련 업무를 담당함
 - Master Trust 제도가 퇴직연금 분야에서 대규모로 운영되므로 단일계약(단일 고용주 제도)보다 실패할 경우 시장에 주는 여파가 커 가입자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

■ PSA 2017에 의해 올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Master Trust 제도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

- 기존 Master Trust 퇴직연금사업자는 2018년 10월부터 6개월 간 TPR에 별도로 사업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적격성 테스트 등을 거쳐야 하며, 2019년 4월 1일 이후에는 승인 없이 운영할 수 없음
 - 특히 가입자가 2천 명 이하인 소규모 Master Trust 퇴직연금사업자는 설립 및 운영비용 그리고 신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 최소 15만 파운드를 보유해야 함
 - 보유 금액은 가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당초 최소 7만 5천 파운드보다 두 배로 증가한 금액으로 설정됨
- TPR은 Master Trust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문제가 발생하거나 법률을 위반할 경우 집행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, 궁극적으로 승인을 철회할 수도 있음⁹⁾
 - 이와 관련하여 2018년 6월에 고용주들이 90만 파운드의 기여금을 적립하지 않았음을 가입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한 Master Trust 퇴직연금사업자에게 1만 5천 파운드의 벌금이 부과된 사례가 있음

■ 새로운 법의 시행으로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Master Trust 퇴직연금사업자의 퇴출은 단순히 사업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입자 보호의 문제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것이 우려되고 있음

- 재무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소규모 Master Trust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업허가 승인을 신청하지 않거나 승인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
 - 퇴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21개의 퇴직연금사업자가 관리하는 가입자는 전체 Master Trust 제도 가입자의 0.5%인 약 5만 명이 될 것으로 추정됨¹⁰⁾
- 퇴출이 예상되는 Master Trust 퇴직연금사업자는 자신의 가입자와 기금을 관리할 다른 퇴직연금사업자를 찾아야 할 것이나 이 과정에서 Master Trust 제도 가입자의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

9) Pension & Investments(2018. 7. 27), "U.K., Ireland consider master trust regulations"

10) FT(2018. 8. 7), "Popular workplace pension schemes to quit UK market"

- 우리나라도 신탁계약(신탁형) 비중이 확대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퇴직연금사업자의 적격성, 재무건전성 등을 반영한 사업자 선정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
- 또한 퇴직연금사업자의 퇴출로 가입자의 수급권이 저해되지 않도록 별도의 가입자 보호장치(다른 사업장으로 이전 조치 등) 마련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 **kiri**